

# 행 정 자 치 부

## 기 관 경 고

제 목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 절차 미이행 등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 1.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공고 절차 미이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호)에 따르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임용자격기준(학력, 경력, 자격증, 능력 등)을 설정하여 시험 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서관, 비서 임용의 경우에만 임용절차 생략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원도에서는 지방○○○ ○○ 상당 ○○○○○(○○○) 채용을 위하여  
2015. 6. 26. 강원도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동계올림픽 준비와 동서고속철도 등 도내 SOC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을 ○○○○○로 임용하겠다는 ‘○○○○○ 신규 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직무의 성격상 비서기능이 일부 있는 ○○직 임용인 점을 고려하여 공고과정 없이 특별 임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그 결과, 공고과정 없이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2015. 7. 13)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 2.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시험 미 실시 등

「지방○○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지방○○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1호)에 따르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sup>4)</sup>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的人数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이중 1/2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4) ①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교원의 경우는 조교수 이상), ②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③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강원도에서는 지방○○○ ○○ 상당 ○○○○○(○○○)을 채용하면서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심사에 따른 시험위원을 구성·운영해야 함에도

2015. 6. 26. ○○○○○ 심규 임용계획 심의 시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임용하는 것으로 의결됨에 따라 서면 심사 등 검증과정이 없었으며 별도의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도 않고 채용하는 등 채용절차 등을 부 적정하게 운영하였다.

####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채용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